

국립중앙도서관 특별조사 결과

기관명	지적 및 조치 요구
국립중앙 도서관	<p>□ 국립중앙도서관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 규정」(문화체육관광부 훈령) 제4조 제2항 및 제4항과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(인사혁신처 예규)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자 본인,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2015년부터 2019년 10월 24일 현재까지 정기심사 안건 중 총 23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심사 처리함 ☞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(기관주의)